

전자보증(B2B) (주)한화건설 확대 시행('09.4.13)

조합과 보증채권자를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증신청과 보증서 제출이 가능한 민간공사 전자보증(B2B)제도를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함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조합원사의 보증서발급 및 제출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위해 전자 보증대상업체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아 래 -

- 대 상 :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 시행일 : 2006. 1. 9 ~ 계속
- 전자보증 가능업체
현대건설(주), 롯데건설(주), 금호산업(주), 대림산업(주),
고려개발(주), (주)두산건설, 신세계건설(주), (주)태영건설,
신동아건설(주), 풍림산업(주), 동부건설(주), 진흥기업(주),
(주)포스코건설, 한신공영(주), (주)삼호, 울트라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주), 경남기업(주) 및 계열사(대아이앤씨,
아이투반산업개발, 대완건설, 대원건설산업), SK건설(주),
(주)한화건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 사 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안내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1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신규등록 및 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매년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동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의하여 조합의 신용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출자할 금액이 정해지며, 동 금액을 예치함과 동시에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발급절차》

신용평가 신청 지점 · 영업소에 신청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참조

신용등급 확정 및 통지

↓ - 3일 소요

신용등급별 출자금 예치 '08년 말 기준 1좌당 : 929,374원

↓ - C등급 : 54좌, CC등급 : 48좌, CCC등급 : 44좌

ex) CC등급 예치시 : $48 \times 929,374 = 44,609,952$ 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 발급받은 확인서는 건설업등록서류에 첨부

◆ 건설업 등록 및 조합가입 절차

건설업등록신청서 작성 및 신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본금 표시분 포함)
2. 자본금 관계서류(조합출자금 포함 2억원이상)
 - 재무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재무제표증명원(세무대리인 확인)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설비조합 발행분)
3. 기술자보유현황표(2인이상)
 - 기술자자격증사본(경력수첩 사본 포함)
 - 상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갑근세, 기술인협회 기술자보유증명서중 1가지 택일)
4. 기타 사무실 확보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

등록관청(시·군·구청) 검토 및 실사

↓ - 처리기간 약 20일 소요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 국민주택채권(법정자본금의 2/1000)
- 면허세(18,000원)

출자전환 및 조합원 가입 기재출 서류 생략

- 건설업 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법인의 경우 정관사본

◆ 조합원의 각종 혜택

-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 없이 26배까지 보증 이용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등 조합원이 필요한 각종 보증서 발급
- 일반 보증사 보다 저렴한 보증수수료
일반보증사의 약 50% 정도가 저렴하게 보증이용(특히, 출자금 범위내 이용할 경우 1건당 3,000원)
- 저렴한 이자율(2%)로 용자이용
출자금예치후 2년 경과시 출자금의 60%까지 용자
- 조합의 각종 수익금은 조합원에게 배당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지분액에 반영

◆ 조합 업무거래 편의제공

- 조합을 방문하지 않고 조합원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각종 업무를 신속·편리하게 이용
 - 조합과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체결, 보증서 발급, 용자신청 등 각종업무
 - 조달청 등 보증채권자에게 G2B 및 B2B전자

보증을 조합의 전산망을 통하여 전자전송

◆ 기타 서비스 제공

- 조합원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설기술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 교육비 조합지원
 - 기술자 자격유지를 위한 법정교육

◆ 근로자재해공제 보험증권 취급

- 조합원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장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지급책임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제도
 -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와 업무제휴하여 보험사 취급비용의 약 30% 저렴하게 조합에서 보험증권 발급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지점 또는 영업소에 문의 하거나, 홈페이지(www.seolbi.com)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상식

바닷물에는 소금이 얼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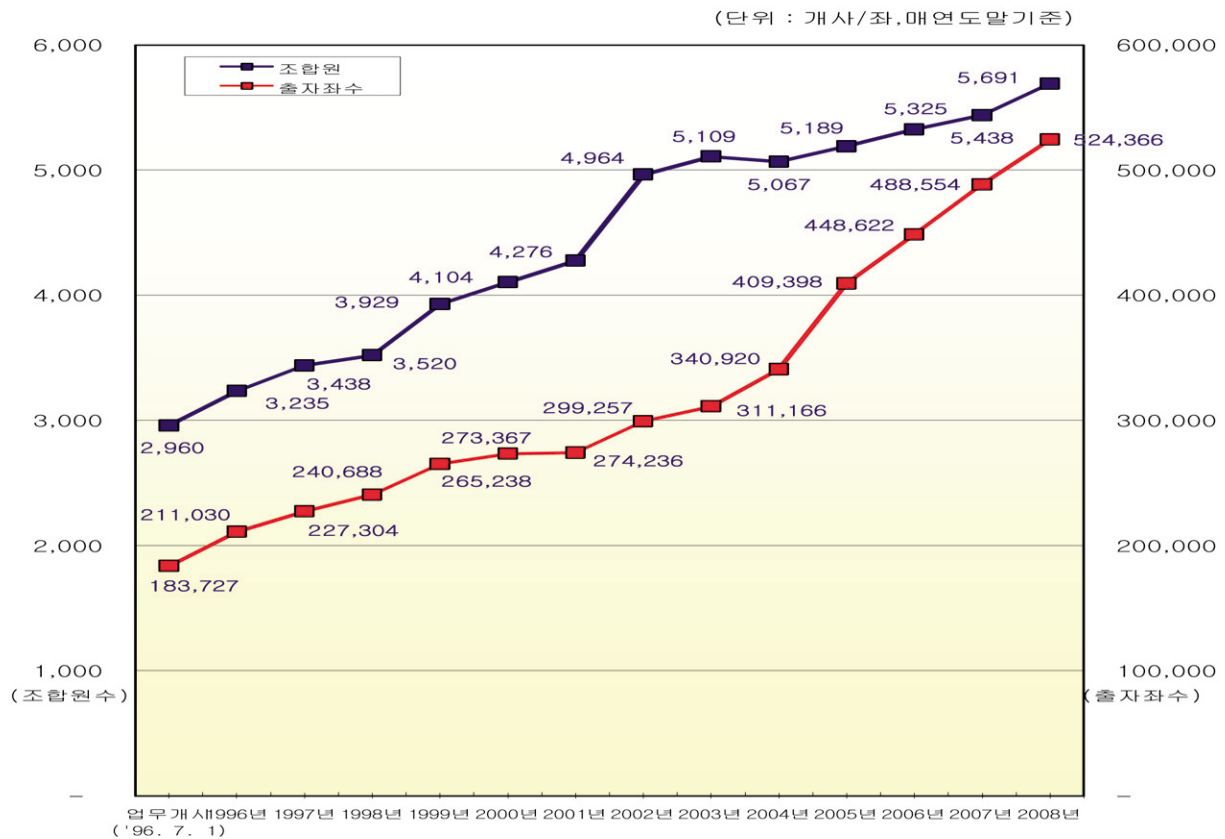
바닷물 속에 들어 있는 소금은 원래 지구의 바위와 땅 속에 있던 것입니다. 수십억년전 빗물에 섞여 아주 조금씩 소금이 바다로 흘러들어온 겁니다. 빗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들며, 다시 증발해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순환합니다. 그러나 바다로 들어간 소금은 증발하지 않은 채 바닷물 속에 계속 남습니다. 해양학자들은 바다 속의

소금농도를 염분이라고 부릅니다. 평균적으로 바닷물 1000그램 속에는 약 35그램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소 편차를 보이는데 홍해에는 40그램, 지중해에는 38그램, 흑해는 18그램, 발틱해는 8그램의 소금이 함유돼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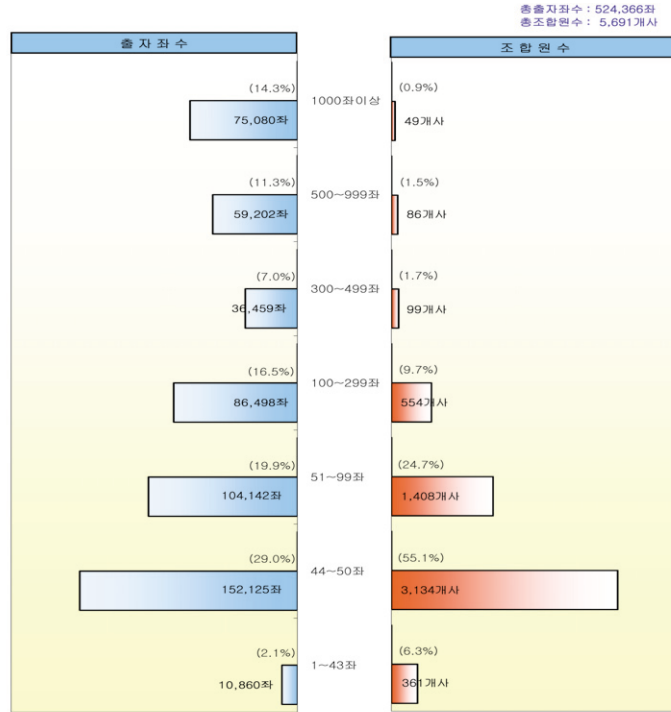
2008 업무통계연보

1. 이 통계연보는 2008년중 보증·용자실적 및 보증사후 관리와 공제업무현황을 작성한 것입니다.
2. 1996년도의 내용은 7~12월까지 6개월간의 실적입니다.
3. 모든 통계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와 전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 연보에서 사용된 “-”기호는 단위미만 또는 해당사항 없음(0을 포함)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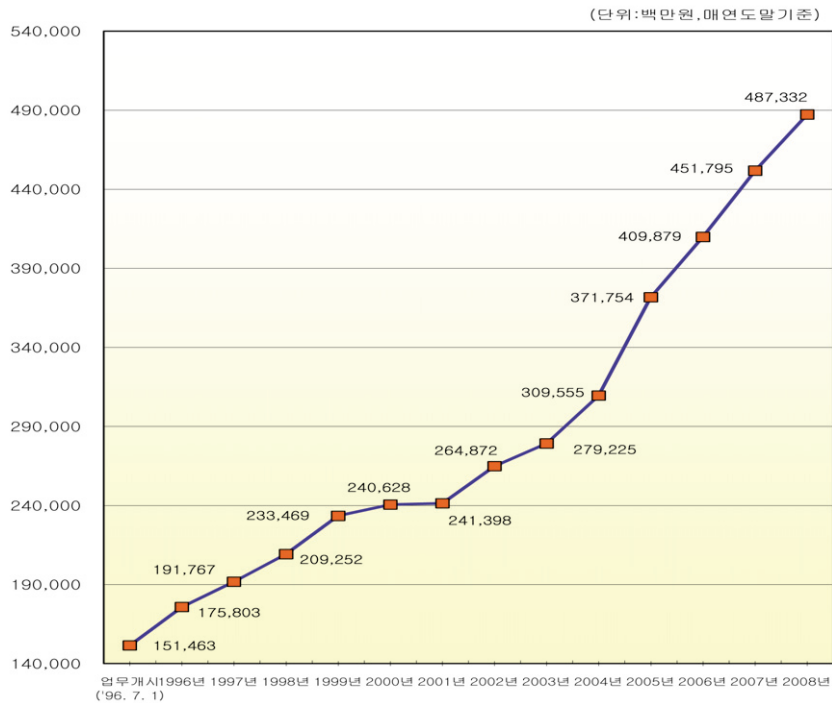
1. 조합원 및 출자좌수 변동추이



2. 출자좌수별 조합원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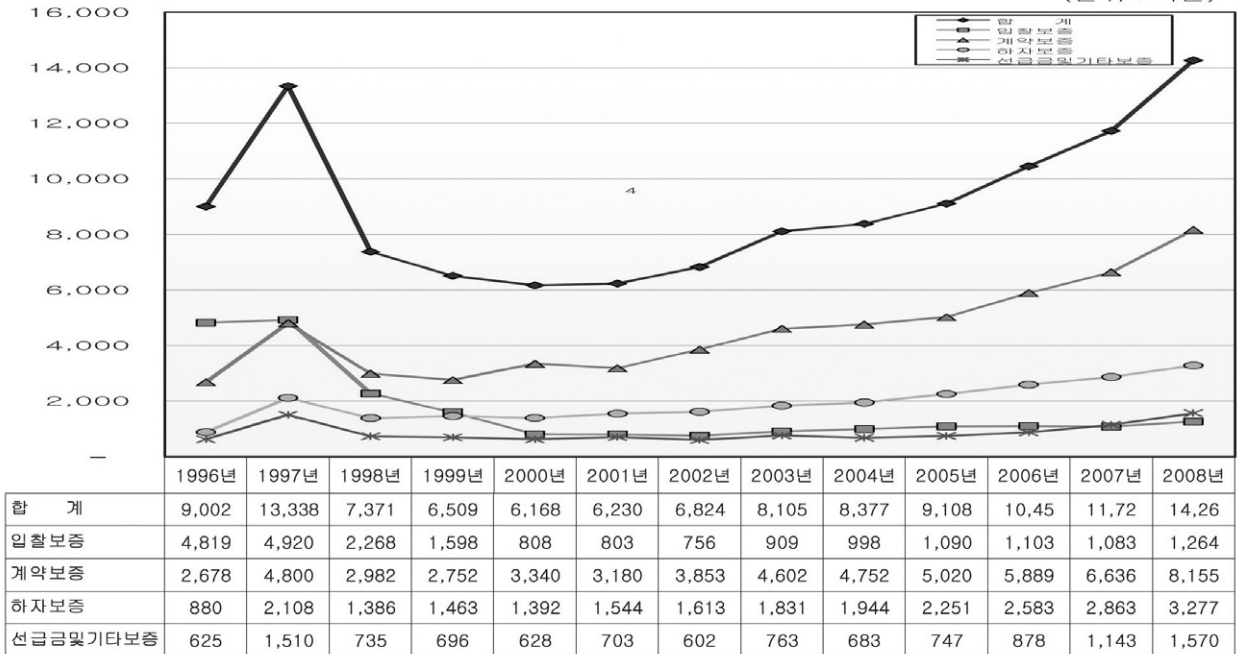


3. 자본금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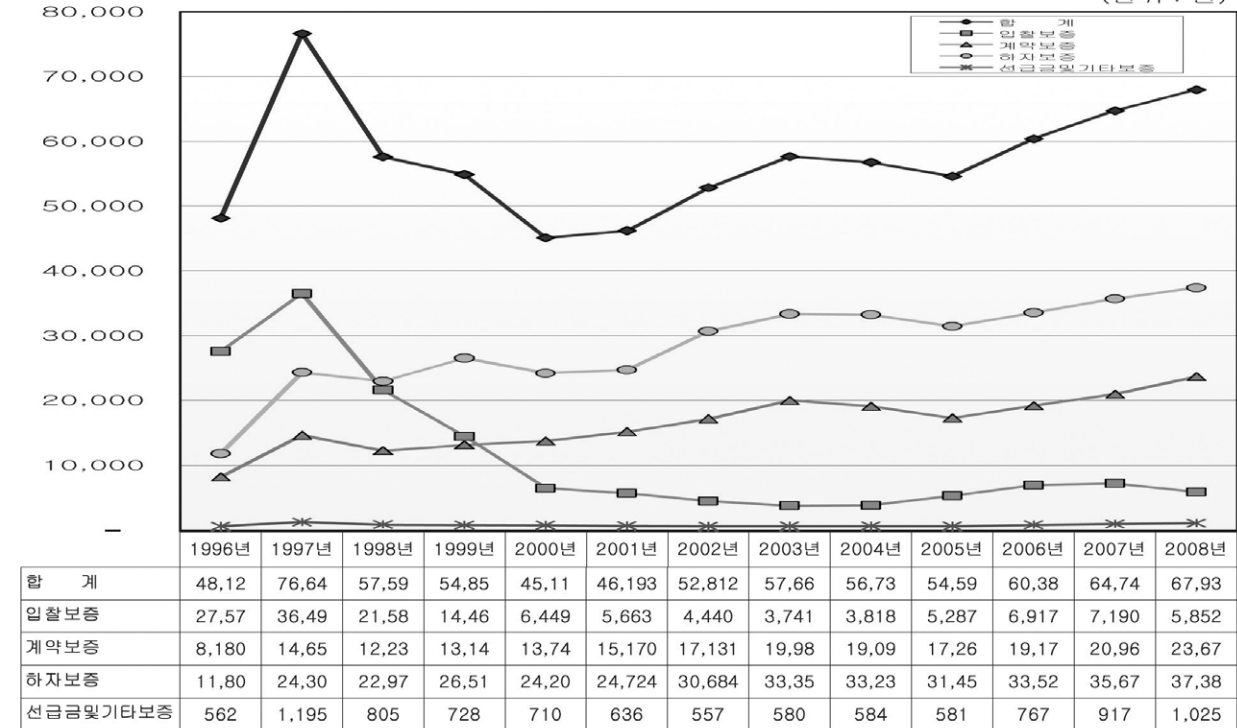
4. 보증실적(금액) 변동추이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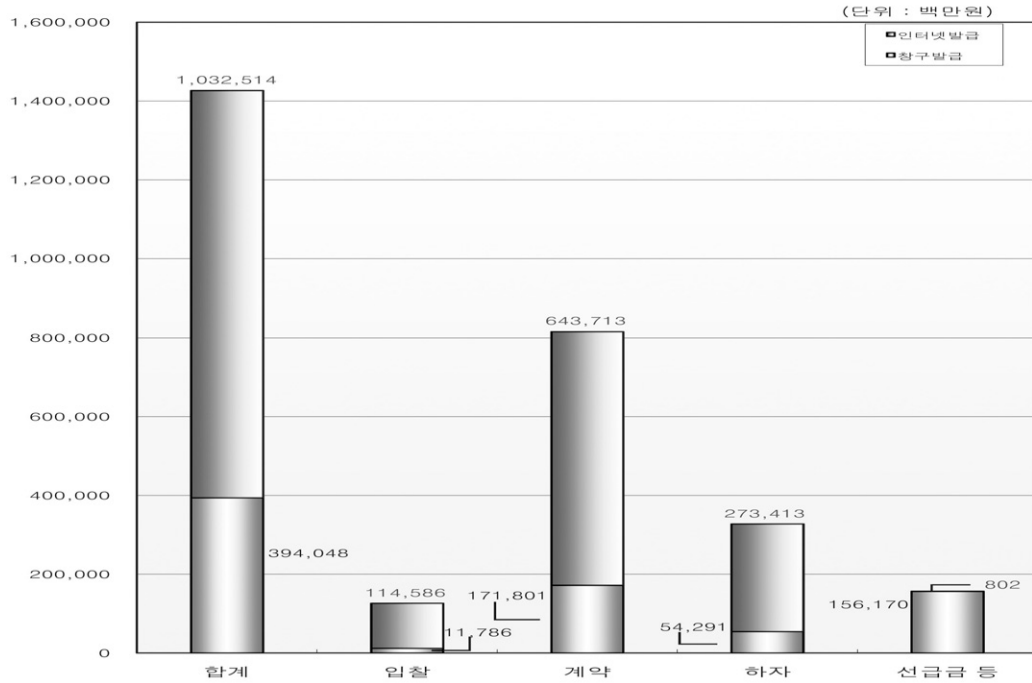


5. 보증실적(건수)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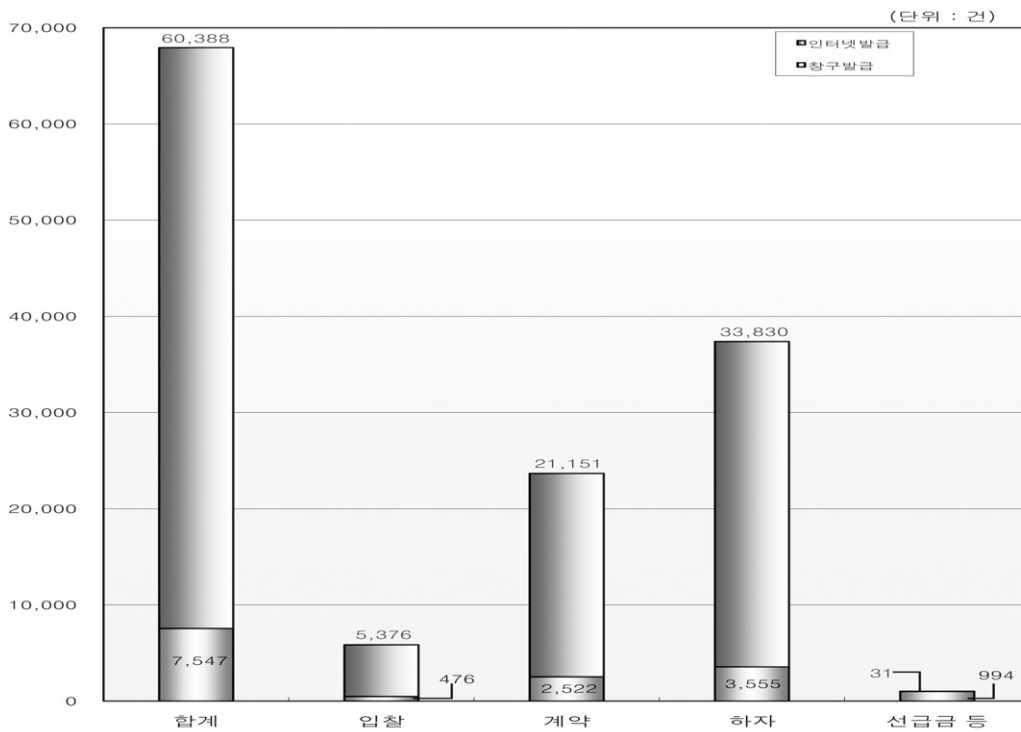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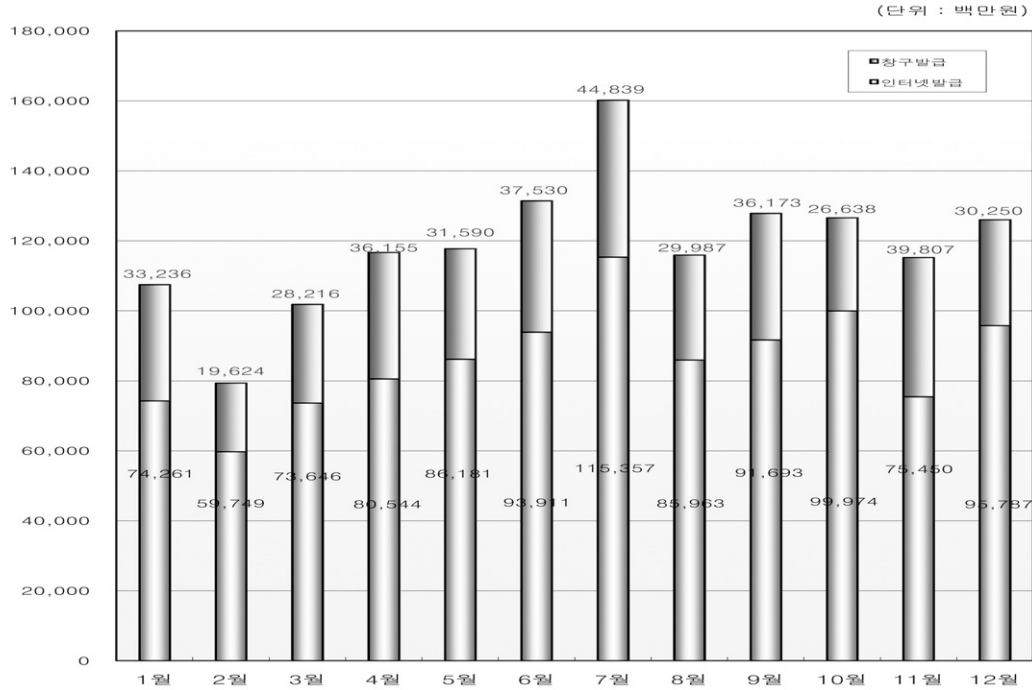
6. 보증별 보증실적(금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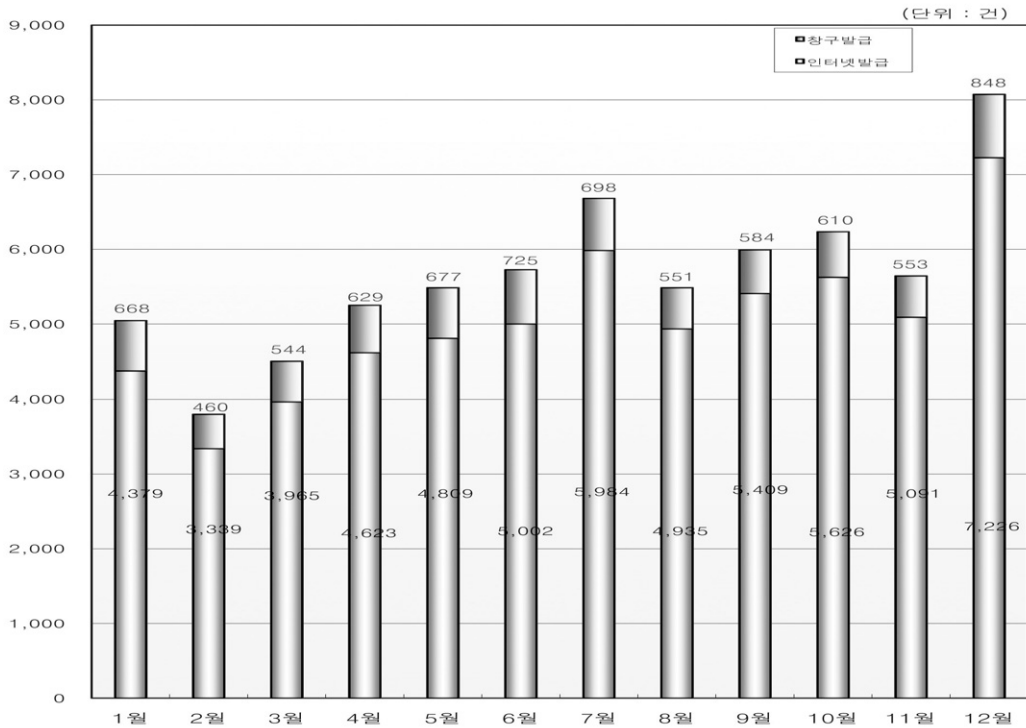
7. 보증별 보증실적(건수) 비교



8. 월별 보증실적(금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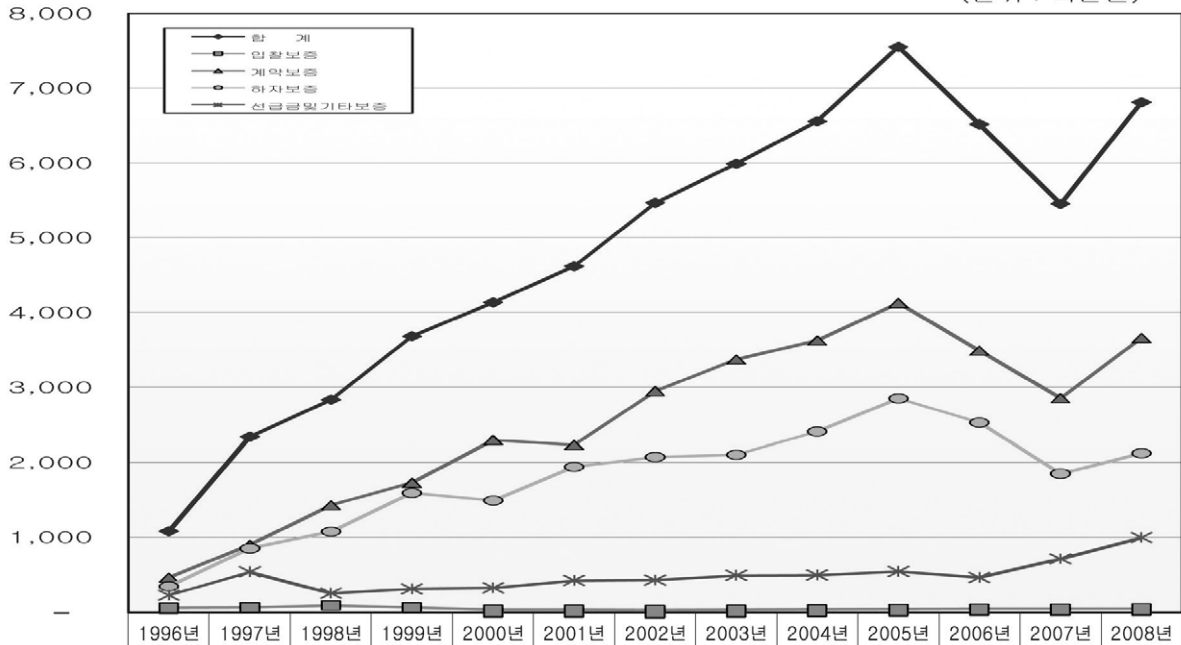


9. 월별 보증실적(건수) 비교



10. 보증수수료 수입 변동추이

(단위 : 백만원)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1,077	2,338	2,833	3,681	4,133	4,615	5,465	5,988	6,555	7,550	6,516	5,452	6,812
입찰보증	55	61	85	61	31	30	27	30	35	40	43	43	45
계약보증	460	895	1,426	1,725	2,295	2,228	2,947	3,370	3,623	4,123	3,487	2,853	3,657
하자보증	341	849	1,075	1,591	1,488	1,939	2,069	2,101	2,408	2,849	2,529	1,847	2,121
선금금및기타보증	221	533	247	304	319	418	423	486	490	538	457	708	990



국토상식

무보험 · 뺑소니차에게 피해를 당했다면?

무보험 ·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면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불의의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에 대해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를 몰라 피해구제를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장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 보유자불명(뺑소니) · 무보험 · 도난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비롯해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입니다.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험업법에 의해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상의 경우 최고 2천만원,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사업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고, 2년의 소멸시효(2007.11.18일 현재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 3년)가 적용됩니다.